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26-----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26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8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6.2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황해룡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'88년 부산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최근 중부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전담 인력 보강과 2005년 6월 말 기능직공무원 퇴직에 맞추어 현재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처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기능직 총 정원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정원의 총수를 조정 : 707명 ⇒ 708명 (안 제2조)

○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 : 692 ⇒ 693명 (안 제2조제1호)

○ 별표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3조)

▷ 구본청 : 481 ⇒ 482명 ▷ 증1명

▷ 일반직 7급 : 174명 ⇒ 175명 ▷ 증1명

▷ 일반직 9급 : 80명 ⇒ 82명 ▷ 중2명

▷ 기능직 8급 : 15명 ⇒ 14명 ▷ 감1명

▷ 기능직10급 : 50명 ⇒ 49명 ▷ 감1명

○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관련 증원되는 일반직 7급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6. 12. 31까지로 함(부칙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필요(붙임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)

다. 관련지침

○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구·정원 보강지침
(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661, 2005. 3. 2)

○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정원승임
(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883, 2005. 3. 19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나무재선충확산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·정원보강지침에 의거 방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, 행자부의 정원 증원 승인(행자부자치제도과-883호)을 받아 우리구 총정원을 현 707명에서 708명으로 1명 증원 하려는 것이며

○ 기타 직급별 증감내역은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인원을 직급별 정원의 책정기준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

○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